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1일

발의자 : 박영섭, 정기혁, 정병기,
강수진, 이관우

1. 제안이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만들고자 기존의 여성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6조)
- 나. 제6조 신설에 따른 장 번호 및 조 번호 수정(안 제7조~제14조)
- 다. 제6조 신설에 따른 서식 별지 수정(별표 제9호)
- 라.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100분의 50할인(별표 1의 비고 제1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교통지도과

라. 입법예고 : 2023. 8. 21. ~ 2023.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노상주차장”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노상주차장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제2호”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노외주차장”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노외주차장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제6조 및 제21조의2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다만 법 제2조3호에서 말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은 총 주차면수의 10분의 1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2분의 1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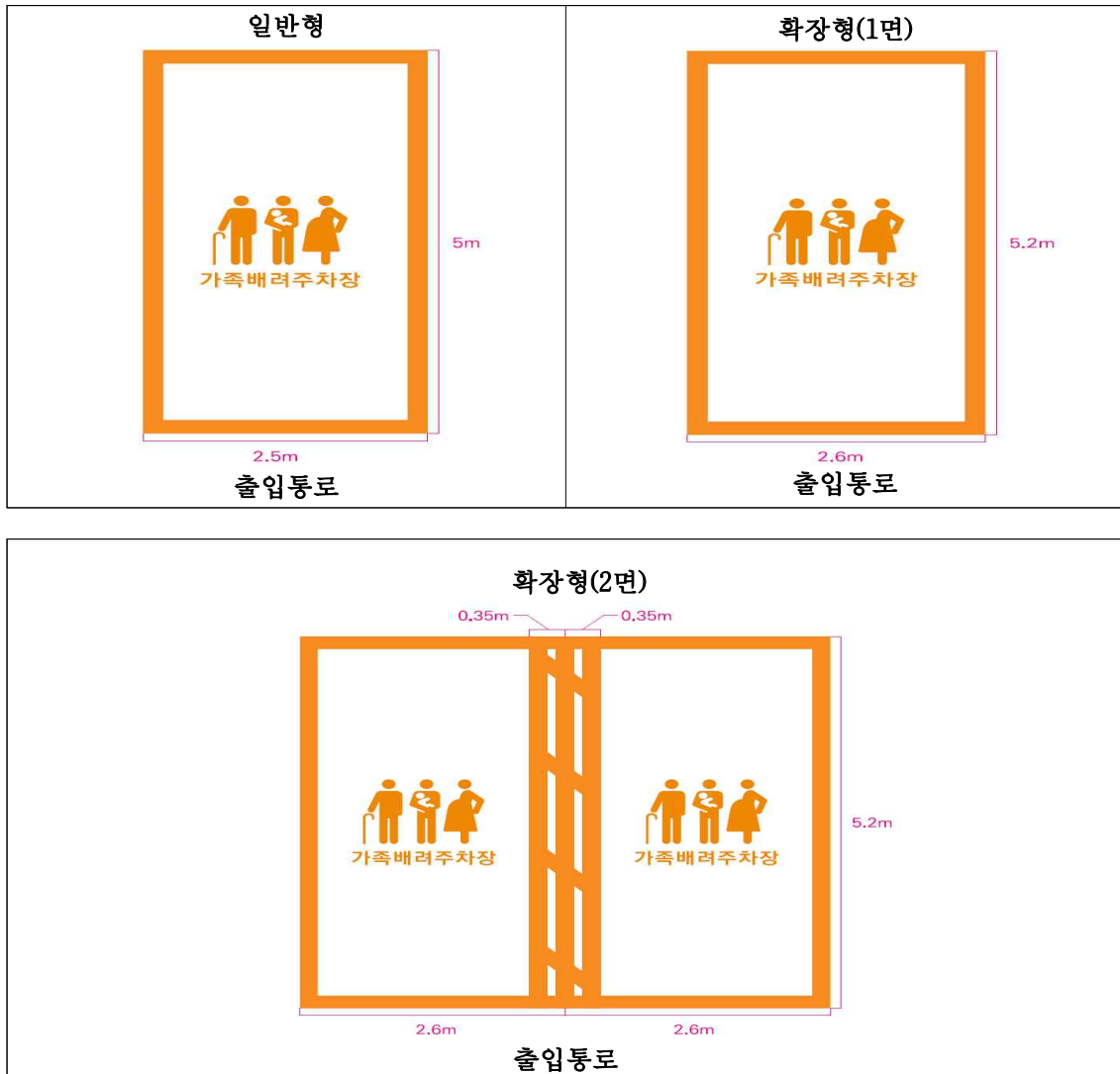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제6조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별지 제9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6조 관련)



－ 비 고 －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산금) ① (생 략)	제3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 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계 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 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을 추가 부과한다.	② ----- ----- ----- ----- ----- -----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8조제1항----- ----- -----
2.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사람이 주차 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 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2. 제7조----- ----- ----- ----- -----
제2장 노상주차장	<삭 제>
<신 설>	제2장 노상주차장
제6조 · 제7조 (생 략)	제7조 · 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 조와 같음)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 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 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제9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 8조제1항제2호----- ----- -----.

② (생 략) 제9조(하역주차구획) ① (생 략)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0조·제11조 (생 략) 제3장 노외주차장 <신 설> 제12조·제13조 (생 략) 제21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하역주차구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조제2항-----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삭 제> 제3장 노외주차장 제13조·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6조(종전의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다만 법 제2조3호에서 말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은 총 주차면수의 10분의 1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	--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2분의 1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생략) 제23조(용자 및 보조의 대상) ① (생략)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2 (현행 제21조의3과 같음) 제23조(용자 및 보조의 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	---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 2조 관련)

<비 고> 1.~14. (생 략)

15.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6. ~ 23. (생 략)

[별지 제9호 서식]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6조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 이상×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 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시 : 가로 75cm × 세로 155cm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 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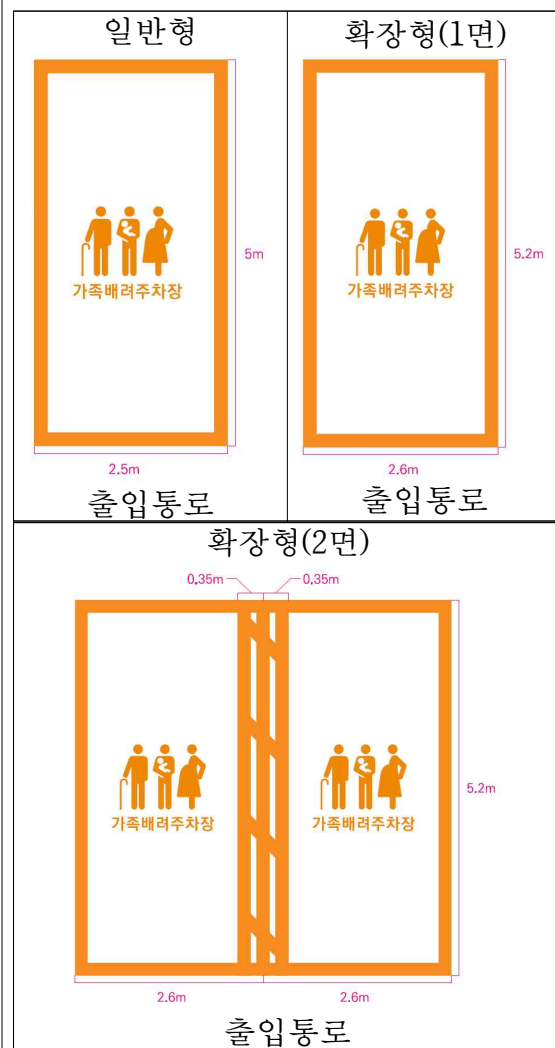
<비 고> 1.~14. (현행과 같음)

1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6. ~ 23. (현행과 같음)

[별지 제9호 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6조 관련)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 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	--